

모금 관련법 알아보기

공익인권법재단 공감
엄형국 변호사

왜 모금 관련법을 알아야 할까?

- 모금기관의 법적 의무와 권한을 알기 위해
 - 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
 - 계속 변화되는 법제도 환경 이해가 필수적
 - 그 외, 기부자와 사회일반이 모금기관과 모금가에게 요구하는 투명성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
- 변화된 세법, 기부금품법에 대한 이해가 요청됨

기부금품모집법

- 정식명칭 :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
- 역사와 현황
 - 1949년 “기부통제법”으로 시작
 - 1951년 “기부금품모집금지법” : 금지예외조항 개설
국제구호, 재난재해, 국방과 상이군경, 자선 등
 - 1995년 “기부금품모집 규제법” : 사전허가제, 향후 사용보고 등
의무 불이행시 처벌, 모집금액 0.2%이내
 - 2006년 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” : 사전등록제, 처
벌조항 동일, 모집금액 10~15% 현실화
 - ‘기부’와 관련된 유일하고 대표적인 법률
 - 국세청에 보고되는 기부금액의 1%규모 등록

기부금품모집법

"기부금품"이란 환영금품, 축하금품, 찬조금품(贊助金品)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- 가. 법인, 정당, 사회단체, 종친회(宗親會), 친목단체 등이 정관,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, 일시금,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
- 나. 사찰, 교회, 향교,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(信徒)로부터 모은 금품
- 다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, 정당,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
- 라. 학교기성회, 후원회,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

기부금품모집법

"기부금품의 모집"이란 서신, 광고,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(出捐)을 타인에게 의뢰·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기부금품모집법

-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고자 할 때, 사전에 등록 및 모집종료 보고, 향후 사용 보고해야 함
 - 1천만원 이상 - 10억원 미만 : 지자체
 - 10억원 이상 : 행정자치부
- * 1주-2주 가량 소요됨
- 등록내용
 - 모집자의 기본사항
 - 모집목적, 모집방법, 모금액사용계획
 - 모집비용 예정액 : 15% 이내(10억원 이상 13%/100억원 이상 12%)
- 사후보고 : 모집종료 보고 및 향후 모집사용 보고
 - 종료 나 중단후 30일 이내 모집결과 보고
 - 기부금품 사용 후 60일 이내 2주 이상 공개(홈페이지 등) 의무
 -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용결과에 대한 별도 회계감사 의무

기부금품모집법

- 법인 주의사항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기부금품모집 불가. 이 경우 모집요청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접수할 수 없음. 접수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.

- 그러나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, 예산 승인,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·통제를 받지 않는 단체는 모집가능

기부금품모집법

- 개인 주의사항

- 거짓내용으로 모집할 경우, 모집시 약속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부금 사용할 경우 처벌됨
- 강압적 모집 처벌됨
- 기부금 접수 시, 접수관련 사항이 기록되어야 함. 개인대 개인으로 접수했을 경우 접수증 발급해야 함.
- 조직을 대리하여 기부금을 접수했을 시, 5일 이내에 조직에 기부금 접수시켜야 함.

기부금품모집법

제4조(기부금품의 모집등록)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~3. 생략

4. 영리 또는 정치·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교육, 문화, 예술,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

나.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

다.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

라.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

마. 보건·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
바. 남북통일,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·협력에 관한 사업

사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

아.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기부금품모집법

제1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,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

기부금품모집법위반 사례

- 제주강정마을회는 2011년 4월 인터넷 강정마을 카페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해군기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의 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올려 모금을 함.
- 그러자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회의 기부금품법위반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, 강정마을회는 뒤늦게 2012년 6월 제주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‘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등록을 거부하였다.

기부금품모집법위반 사례

- 제주강정마을회는 2011년 4월 인터넷 강정마을 카페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해군기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마을의 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올려 모금을 함.
- 그러자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회의 기부금품법위반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, 강정마을회는 뒤늦게 2012년 6월 제주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‘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등록을 거부하였다.

기부금품모집법위반 사례

- 2013년 1월 검찰이 기부금품법위반 등에 관해 기소하였고, 1심 재판 진행 중에 해당 변호인은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부금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,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였다.

기부금품모집법

- 2014년 행정안전부 개정안

기부금품 등록가능 사업 명기 -> 불가능한 사업 명기(네거티브제)

가. 영리·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나.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다. 공공질서·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- 정부의 나눔포털 활성화
- 기부금품 사용기한을 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로 규정

기부금 관련 개정 세법 내용

- 2014년 소득세법 개정(소득세법 59조의4)

기부금 소득공제 -> 세액공제

(개인사업자는 여전히 필요경비산입 가능, 법인세는 손금산입 유지)

- 기부금 세액공제의 내용

지정기부금 : 기부한 금액의 15%를 세액에서 공제 /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공제

(소득금액의 30%까지 인정)

법정기부금 : 기부한 금액의 15%를 세액에서 공제 /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% 공제

(소득금액의 100%까지 인정)

한도 계산 시 법정기부금 먼저 인정. 당해년도 인정 못 받은 금액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.

기부금 관련 개정 세법 검토

가.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입 증대효과보다 전체 기부금 감소(예측치)가 훨씬 큼

- 현행 세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취지를 담아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연장이나 기부금 수령단체 투명성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음
- 기부행위에 드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기부금을 줄이는 폭이 높음. 전체 기부금 감소율이 12.5%로 매우 높게 나타남. 즉, 세수 780억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기부금 12,571억원이 감소함. 사회전체적으로 손실이 큰 개정안으로 사료됨.

기부금 관련 개정 세법 검토

나.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, 개인과 법인별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기부세제를 더욱 어렵고 일관성 없게 만들게 됨

소득세법만 수정하여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예전과 같이 손금산입으로 적용됨.

-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법인이 같은 기관에 똑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이로 인한 세제혜택을 다 다르게 받아 혼선이 야기될 우려

기부금 관련 개정 세법 검토

다. 기부행위, 특히 고소득자의 기부행위의 장려가 필요한 시점임

-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좀더 많은 세부담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. 이러한 개편은 결국 고소득자의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역시 줄이는 결과는 가져올 것임.
- 기부금 규모가 2000년 4.67조원에서 2011년 11.16조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. 그렇지만 이 규모는 GDP의 1%대로 미국의 2%에 비해 절반 수준임. 이 중 65%가 개인기부금, 35%가 법인기부금인데 미국은 75%가 개인기부, 특히 상위 10%가 전체 개인기부금의 50%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으로 기부규모가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.

나눔기본법안 내용

2012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준비되어 2013. 11. 문정림 의원 발의

- 나눔 관련 법률은 목적별·대상별·부처별로 각각 분산 규정되어 있어 입법 목적이 상이한 각각의 법률을 총괄·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고,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과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계획, 지원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- 따라서, 우리사회가 국격에 맞는 성숙된 나눔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지는 나눔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극 장려하여 촉진될 수 있도록,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철학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개인정보보호법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..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개인정보보호법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[제15조제1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

제17조 (개인정보의 제공)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감사합니다.